

▣ **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방법**

서류제출 기한	2021년 1월 9일(토) ~ 1월 16일(토) 17시 도착분까지 (반드시 지정된 기간내 서류를 접수하시길 바랍니다.)
제출방법	건본주택 방문접수
수신처	경상북도 구미시 신평동 301-15 (대표번호 054-443-1000)
유의사항	·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미착용자 및 체온 37.5도 이상 고객은 방문이 불가합니다. · 기한 내에 아래 자격서류를 발급하시어 건본주택 방문 후,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·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점을 취소하며, 부적격 당점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▣ **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출 서류**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 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 확인서류	○		신분증	본인	·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·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(뒷자리 포함), 과거주소 변동사항, 세대구성,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·주민등록번호 (뒷자리 포함), 과거주소변동사항 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성명, 관계 등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인감증명서	본인	·용도에 「아파트 계약용」으로 직접 기재(반드시 본인발급용으로 발급진행)
	○		인감도장	본인	·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·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(본인 직접 계약에 한함)
	○	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·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, "상세"로 발급
	○		출입국 사실 증명원	본인	·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 또는 거주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 ※ 발급기간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발급 (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)
	○	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·본인 및 배우자 성명, 주민등록번호 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, "상세"로 발급
	○		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	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	·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제출 (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) ※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 이상의 변동사항,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"상세"발급(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)
	○		소득증빙 서류	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	·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(단,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)
	○		비사업자 확인각서	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	·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·건본주택 비치
	○		복무 확인서	본인	·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 자녀	·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·주민등록번호 (뒷자리 포함)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"전체포함"으로 발급 ·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·주민등록번호 (뒷자리 포함)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기본증명서	자녀	·자녀의 출생 관련 일자 확인 필요 시
	○		가족관계증명서	배우자	·배우자의 전혼자녀 확인 시(본인의 주민등록표 상 등재된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)
	○	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·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 (임신진단서) 제출 ※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.
	○		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 또는 배우자	·건본주택 비치
	○	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·입양의 경우
부적격 통보를 받은자	○		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		·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(가옥대장등본 포함)
	○		무허가건물확인서		
	○		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		
	○		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	

- ※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0.12.18(금)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전체)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.
- 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※ 특별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(검증)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표 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(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)

구분		월평균 소득기준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
우선공급 (75%)	외별이	100% 이하	5,554,983원	6,226,342원	6,938,354원	7,594,083원	8,249,812원	8,905,541원
	맞별이	120% 이하	6,665,980원	7,471,610원	8,326,025원	9,112,900원	9,899,774원	10,686,649원
일반공급 (25%)	외별이	100% 초과 ~ 120% 이하	5,554,984원 ~ 6,665,980원	6,226,343원 ~ 7,471,610원	6,938,355원 ~ 8,326,025원	7,594,084원 ~ 9,112,900원	8,249,813원 ~ 9,899,774원	8,905,542원 ~ 10,686,649원
	맞별이	120% 초과 ~ 130% 이하	6,665,981원 ~ 7,221,478원	7,471,611원 ~ 8,094,245원	8,326,026원 ~ 9,019,860원	9,112,901원 ~ 9,872,308원	9,899,775원 ~ 10,724,756원	10,686,650원 ~ 11,577,203원

-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→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+ {1인당 평균소득 (655,729) * (N-8)} ※ N → 9인 이상 가구원수
- 기준소득 :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% 초과시 일반공급 25%(상위소득) [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(월평균 소득기준 120% 초과 ~ 130% 이하)]을 선택하여야 함.
- 상위소득 :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.
-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자인 (만 19세 이상)의 합산 소득입니다. (단, 세대의 실거·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)
-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. (단,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으로 인정)

■ 신혼부부 소득입증 제출서류

해당자격	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① 재직증명서 (직인날인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(원본, 직인날인)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(원본) -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(직인날인)	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/세무소
	금년도 전직자 / 신규취업자	① 재직증명서 (직인날인)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(직인날인)	①, ② 해당 직장
	전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 (직인날인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(원본, 직인날인) ※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"주(현)종" 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 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	①, ② 해당 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	① 재직증명서 (직인날인) ②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	①, ② 해당 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① 사업자등록증 (사본)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(원본)	①, ② 세무서
	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	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(사본) ※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 (원본) 제출	① 세무서
	신규사업자 등	① 사업자등록증 (사본) ②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연금정산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(부분)	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
	법인사업자	① 법인등기부등본 (사본) 및 사업자등록증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(원본)	① 등기소 ② 세무서
	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(원본)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(원본)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	① 세무서 ② 해당 직장
국민기초생활 수급자	① 수급자 증명서	① 주민센터	
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 근로자	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(비고 : 직인날인) ※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연금정산용 가입내역확인서	① 해당 직장 ※ 국민연금관리공단	
무직자	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(견본주택 비치)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 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	① 견본주택	

- ※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0.12.18(금)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전체)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.
- ※ 해당직장 및 해당기관에서 발급되는 서류에는 직인 날인이며 제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 (단, 공동인증서를 통한 인터넷 발급의 경우 제외)
- ※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문의. 054)443-1000